경기ABC(Art Born Culture)



경기 예술은 문화로 대어난다





기간_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기념방송 2020년 9월 11일 오후 4~5시)

장소_ 온라인 유튜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주최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관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후원_ 경기도, 경기도의회

Contents

3개단체 기관 대표가 모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회장 사)경기민예총 이덕규이사장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김용수회장

사업개요

전체개요

"표현"

사전공연 영상촬영 〈사진 및 공연팀소개〉

"새로운 소통 방법 찾기"

각 단체별 온라인 토론회 현황

1)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_ 포스트고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

2)사)경기민예총

_ 예술인기본소득과 예술인의 기준

3)경기도문화원연합회

_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5개년 계획과 지역

"대안마련"

홀로그램 제작과정 공개

첨부자료

홍보물

웹포스터, 타임테이블

경기ABC(Art Born Culture)

경기 예술은 문화로 래어난다

결과보고서

3개단체 기관 대표가 모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예술인총연합회, 경기민예총이 함께 모여 연합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경기민예총 이사장 이덕규

경기도 3개 문화예술단체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그리고 저희 경기민예총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부터(준비해오던 중) 전염병과 여러 사정으로 미뤄지다 결국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게 된 점 매우 아쉽습니다.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김용수

경기도의 공연예술을 활발히 펼치기 어려워 저도 아쉽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본 프로젝트는 크게 세가지 콘셉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예술의 표현"이라는 콘셉입니다. 코로나는 예술가의 표현과 작품의 소통, 그것이 미치는 지역문화에의 영향 등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문화원, 민예총과 예총 소속 예술가들이 코로나 이후, 예술적 표현의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콘셉은, "새로운 소통방법 찾기"입니다. 예술가가 펼치는 활동이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본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상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사업의 결과물을 '언제나 어디서나'보고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발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콘셉은 "대안마련"입니다.

예술가의 존재와 활동은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기 예술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진단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논의의 장, 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향후 각 협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전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사)경기민예총 이사장 이덕규

네, 문화예술도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방법론,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예술분야의 개념을 수정하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출발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저희 경기민예총은 이번 사업의 각 지부와 각 장르 위원회에서 민예총만의 고유한 색깔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처우와 활동의 보장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김용수

그리고 경기도 3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이렇게 연합으로 축제를 실행하는 것이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향후 협력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천의 단초를 찾기 위한 본 행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민예총, 경기도예술인총연합회 관계자 분들과 참여해 주신 예술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이 경기지역의 문화예술의 선봉에서 더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김용수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3개 단체가 더욱 노력하고 연구해서 더 많은 예술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경기민예총 이사장 이덕규

각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공연의 기획으로 가을의 입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과 몸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ABC(Art Born Culture)

경기 예술은 문화로 래어난다

결과보고서

사업개요

전체개요

l 사업개요

1. 목 적

- ■경기도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 ■경기도내 문화예술발전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 마련
- ■문화예술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대중화 방안 모색
- ■'코로나19'이후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 실험

2. 개 요

■행 사 명 : 〈경기 ABC〉 3개 단체 연합행사

■기 간: 2020년 9월 1일~ 15일(화). 보름간

(오프닝세러머니 2020년 9월 11일(목) 오후4시~5시)

■장 소: 경기도 광명문화원 공연장 및 축제 홈페이지업로드

■주 최: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이하 '문화원' '예총' '민예총'으로 표기

■후 원:경기도,경기도의회

3. 운영방침

- ■경기도 문화예술 3개 단체 협력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확산시스템 구축
- ■경기문화예술인을 100인 선정, 경기예술인 미래네트워크 토론회 개최
- ■경기도 예술의 화려함의 극치를 전달하기 위한 공연 영상 사전 촬영 및 편집
-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유튜브 영상송출로 문화예술의 다변화를 꾀함
- ■다면적인 온/오프라인 축제로 구성

4. 추진방향

- ■무대, 음향 등 오프라인 시설 지양하고, 도민 누구나가 관객이 될 수 있도록 구성
 - 무관중 경기도 공연 예술을 사전 영상으로 제작. 송출 형태

- 개최지 지부의 전문가와 함께 펼치는 일상예술
- ■온/오프라인의 표현방법을 활용: 개최지의 대표지역 1곳을 지정하여 3개 단체 오프라인 편집영상송출, 추후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채널에 카테고리 생성 및 업로드
- ■경기도 문화예술의 건전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
 - 3개 단체에서 경기도 내 문화예술인을 선정해 화상회의를 진행하거나, 단체별 소규모 그룹으로 화상회의 진행 후 대표자 논의
 - 문화원 주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5개년계획과 지역
 - 예총 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
 - 민예총 주제: 예술인 기본소득과 예술인의 기준
 - 화상회의 영상본 효과적 편집 후. 유튜브 채널 업로드
- ■개최지 장소를 적극 활용해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토론 직·간접적인 장치마련
 -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댓글참여 활성화

□ 축제 추진프로세스



5. 기대효과

- ■경기도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확고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위상제고
-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인프라 확장 및 능동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도민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일상의 문화트렌드 형성

6. 진행절차

- 공연 영상 및 토론회 영상 및 자료

3개 단체 기획회의	\Rightarrow	사업계획에 따른 공연팀 및 온라인 토론회 기획서 제출	\Rightarrow	사전 공연 영상 촬영	\Rightarrow	3개 단체 온라인 토론회 진행	\Rightarrow
-영상편집 -유튜브 카테고리 생성	\Rightarrow	온/오프라인 플랫폼 방송 송출	\Rightarrow	유튜브 채널 카테고리 영상 순차적 업로드	\Diamond	온라인 플랫폼 전환	

7. 추진일정

① 전체일정

구분	4~5 6월		월	7월		8월		9월		
下正	월	1~15	16~31	1~15	16~31	1~15	16~31	1~10	11~20	21~31
기본계획 수립										
기관실무자 회의										
행사장 및 주변 조사										
세부계획 수립										
보도자료(sns 업로드)										
단체별 계획서 접수										

구분	4~5	6	월	7	월	8	월		9월	
下 世	월	1~15	16~31	1~15	16~31	1~15	16~31	1~10	11~20	21~31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관계자 회의										
섭외 및 계약										
온라인토론회										
영상촬영										
최종리허설										
플랫폼오픈(행사기간)										
영상상영기간										

8. 단체별 준비사항

- 사전영상 제작 컨셉: 경기 예술을 광명에서 나타내는 것이므로, 화려한 무대 구성 요함

단체명	세부구성	참가자선정	공연요소	비고
	공연팀	개인이나 팀 3팀	10분 소요공연 팀당 2곡 정도	특정일 지정 영상촬영
예총 · 민예총 · 문화원	온라인토론회	1) 경기도 문화예술인 00명 ① 국악인 0명, ② 성인가요 0명, ③ 타악 0명, ④ 연주악기 0명 등으로 분야별 구성 2) 경기도 00명 문화예술인 참여	1)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5개년 계획과 지역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 3) 예술인 기본소득과 예술인의 기준	화상회의를 통한 주제토론

9. 온/오프라인 세부구성

- ■오프라인: 9월 11일 상영, 광명문화원 공연장
 - 사회자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사전 제작 영상 편집본을 해당 시간 할애 편성
 - 상영영상 제작 예시(편집영상은 경기도 문화예술을 잘 표현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담론을 담아내는 영상으로 구성할 예정)

No.	구분	세부주제	구성요소(예시)	영상구성
		계		60분
1	공연 영상	경기도 문화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분야별 총 6팀 선정	국악, 가요+성악, 악기	각 단체별 : 팀당 3분×3팀×3개 단체=45분
2	온라 인토 론회	각 단체별 문화예술인들의 현황과 생각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 공유,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담론 형성	분야별 10명씩×10회=100명의 형식을 갖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위한 토론	각 단체별 : 기 제출한 기획서에 따른 5분×3개 단체 영상편집

11행사구성 (안)

- 1. 주요행사 (9.11 화, 16:00~17:00)_ 온라인 _ 이후 보름간 특정시간 활용 영상 송출
- ■메인 프로그램
 - : 개최지(광명) 공연장 활용하여, 사전 공연 영상제작 완료
 - : 프로그램 소개시 상영
 - : 사회자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사전 제작 영상 편집본을 해당 시간 할애 편성

시간	구분	세부내용	비고
16:00~16:05	단체소개, 행사소개 영상		
16:05~16:10	오프닝 문화원 공연영상	개최지 동아리	
16:10~16:30	예총 공연영상	공연3팀	
16:30~16:55	민예총 공연영상	공연4팀	
16:55~	폐회		

- ■온라인 유튜브 채널 및 카테고리 영상 업로드
 - 유튜브 카테고리 : 경기문화예술
 - 3개 단체에서 제작한 편집 영상을 업로드하여, 이후에도 플랫폼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
- ■온라인 플랫폼 행사 후 오프라인 관리 : 올 연말까지
 - 온라인 유튜브 영상 업로드 : 홀로그램 영상
 - 공연자 및 관계자 홀로그램 키트 제공 : 공연을 전시형태로 볼 수 있도록 구성

Ⅲ추진과정

1. 프로그램에 따른 업무분장

No.	구분	업무분장	제출사항	비고
1	문화원, 예총,	-출연팀 확정	출연팀 공연신청서	~8/7
ı	민예총 공연팀	-사전 공연 영상 촬영	공연	8/11~8/12
2	문화원, 예총,	-주제 설정 차기자 한저 미 지해	온라인토론회 계획서	~8/14
۷	민예종 온라인토론회	-참가자 확정 및 진행 -결과자료 제출	결과영상 (예_화상회의자료)	~8/21
2		-영상 촬영 -영상 편집		8/30
3	문화원	−전체 온/오프라인 행사추진	출연팀 공연신청서	9/1~9/15

경기ABC(Art Born Culture)

경기 예술은 문화로 래어난다

결과보고서

사업개요

"표현" _사전공연 영상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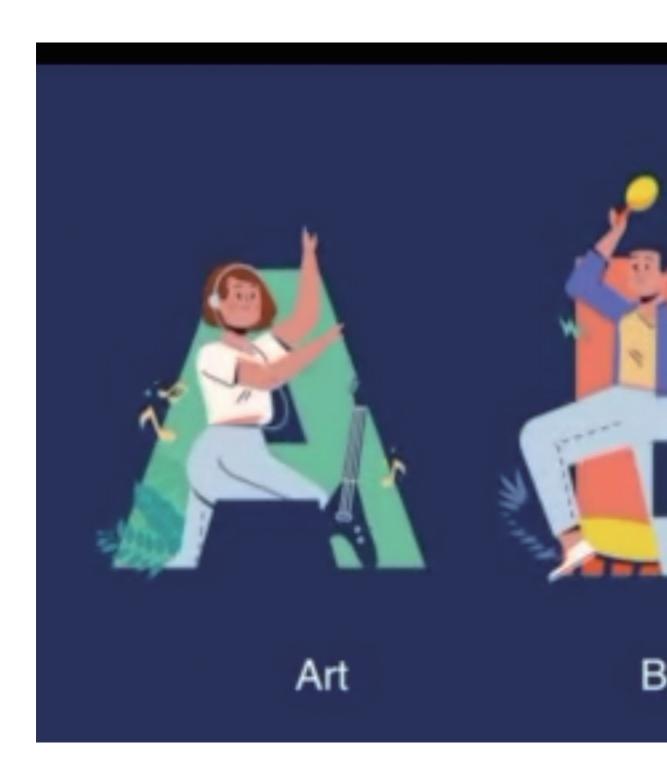
축제기간 영상 업로드 일정표

No.	업로드 일정	구분	시놉	러닝타임 (초)	비고
1	8.31	축제설명1	전체 큰 틀에서 설명	60	
2	9.1	축제설명2	공연, 토론회 구성요소로 설명	45	완료
3		공연문화원1	사전공연영상 문화원만 분리 편집	30	뉴스형식 완료
4	9.2	공연예총1	사전공연영상 예총만 분리 편집	60	단편소개
5		공연민예총1	사전공연영상 민예총만 분리 편집	50	단편소개
6	9.7	종합메이킹	사전공영영상 메이킹	47	사전공연 종합
7	9.10	기념식뉴스	기념식 안내 행사일시와 행사주요구성내용전달	20~ 30	뉴스형식
8	9.11	기념식 실시간	실시간 방송	3600	
9	9.12	공연예총	3팀 공연영상	300	
10	9.13	공연민예총	4팀 공연영상	300	
11	9.14	공연문화원	광명문화원 공연영상	300	
12	9.15	행사완료일	하이라이트 정리	60	

[※] 업로드일정과 내용은 전체 일정진행시 달라질 수 있음

[※] 영상 업로드일정에 맞춰 각 단체에 보낼 예정

기념방송 공연장면





공연캡쳐_무용_사랑가



공연캡쳐_소리_서도소리



공연캡쳐_성악_오페라의 유령



공연캡쳐_성악_향수



공연캡쳐_가요_이정열



공연캡쳐_버나_예술마당시우터



공연캡쳐_풍물_굿연합



공연캡쳐_사자놀이_굿연합과 같이



공연캡쳐_연주_거문고자리



공연캡쳐_그러나경기는평화를노래하고



공연캡쳐 _광명문화원



3개 단체 공연팀 정보

단체명	구분	팀명	곡명	소개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무용	한국예총 경기도무용 협회	사랑가	춘향이와 이몽룡의 남원 광한루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한국무용으로 표현함.
	국악	한국예총 경기도국악 협회	서도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예능보유자와 이수자가 이끄는 북녂땅 우리소리를 통해 지금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자 함
	성악	라루체	향수, The Pantom of the Opera	사랑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곡으로 클래식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사)경기민예총	대중 음악	이정열	그대고운 내사랑, 꼴지를 위하여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80년대 대표곡을 원곡자가 다시 불러주어, 옛기억을 회상하는 역할을 하고자 함
	굿	예술마당시우 터+민악솟대	소원성취 버나놀이	풍류와 멋이 녹아있는 공연으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함.

단체명	구분	팀명	곡명	소개
				버나잽이 익살스런 재담따라 보름달 같이 둥근 버나에 소원을 담아 노는 버나놀이. 1996년 설립된 민악 "솟대"는 성남을 근거로 하여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발굴, 보존하며 더 나아가 창조적인 계승을 통해 새로운 문화 양태를 만들어 가는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
사)경기민예총	풍물	경기민족굿 연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태민안 비나리와 사자춤	도민과 함께 직접 즐길 수 있는 일상의 문화트렌드를 만들어가고자 함.
	타악 연주	거문고자리	별 헤는 밤, 시의 숲	거문고와 서양악기의 조화로운 연주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쉽게 접하지 못한 앙기들로 표현되는 새롭고 완성도 높은 예술작품을 선사하고자 함. 거문고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앙기와의 조화를 통해

단체명	구분	팀명	곡명	소개
				詩의 숲을 거닐 듯 힐링을 테마로 한 작품
경기도문화원 연합회			그러나 경기는 평화를 노래하고	이 곡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인 2019년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다. 이 노래는 경기도를 노래하는 유일한 곡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사람에게 수많은 얼굴이 있듯이 경기도민의 수많은 얼굴이 있기 때문이다.
	광명 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달과 바람에 실어	광명의 민회빈 강씨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로, 광명문화원 문화학교 강사가 주축이 되어 조선과 부모님, 소현세자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경기ABC(Art Born Culture)

경기 예술은 문화로 대어난다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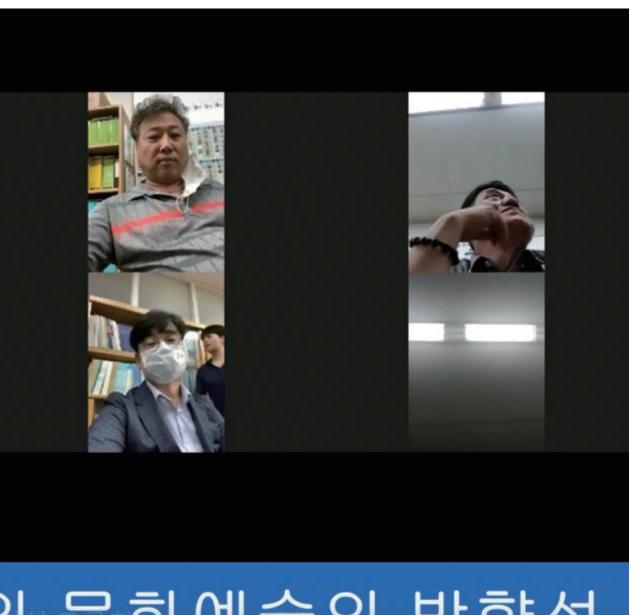
사업개요

"새로운 소통 방법 찾기" _각 단체별 온라인 토론회 현황

온라인 토론회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의문화예술의 방향성

총 경기도연합회

0:33:29

온라인 토론회 계획서

1. 개요

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					
기획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예술계 전반에 행하여졌던 공연과 전시가 이전으로 돌아갈수가 힘들듯하다. 이는 예술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예술인 실태를 파악해 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 내용 요약	1. 예술인실태 1)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경기지역 예술행사규모 2) 코로나19가 경기예술인들의 수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추가공모의 필요성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 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 ① 플랫폼 개설 ② 전문예술법인의 설립 필요성					
전체 구성 (전체 참여자) 추진일정 등 세부사항	01. 김용수 경기예총회장 02. 윤기섭 경기사진협회장 03. 백운석 경기국악협회장 04. 오현규 경기음악협회장 05. 이예지 경기문인협회장 06. 조동균 경기미술협회장 07. 천진철 경기연예협회장 08. 한대관 경기연극협회장 09. 김기백 경기무용협회장 10. 이기원 경기영화인협회장 11. 유명종 경기예총사무처장 12. 정수일 경기건축가협회 사무국장 □ 추진일정 일시 : 2020월 8월 18일 _ 토론회 자료집 배부 2020년 8월 20일 11시 _ 토론회(Zoom 촬영)					

2020년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토론 발제문

발제자: 김용수(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회장)

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예술문화계도 그동안 행하여졌던 공연과 전시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창작을 거론하기 전에 생존의 문제가 당면의 문제이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많은 공연과 행사 전시 등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유투브 등의 SNS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으나 동영상 제공이상도 이하도 아닌 창작을 위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술인 실태를 파악해 보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예술문화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예술인 실태

1. 「코로나19」 로 취소·연기된 경기지역 예술행사 규모

■'20년 1~4월 사이 「코로나19」 사태로 취소·연기된 경기지역 예술행사는 총 2618여건으로 피해금액은 일백육십구억삼천오백이십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20,1~4월 사이 취소·연기된 경기지역 문화예술행사 규모 - 단체>

 건수	규모(만원)	비고
1181건	889,050	

〈`20,1~4월 사이 취소·연기된 경기지역 문화예술행사 규모 - 개인〉

건수	규모(만원)	비고
1437건	804,470	

〈`20.1~4월 사이 취소·연기된 경기지역문화예술행사 규모 - 합계〉

 건수	규모(만원)	비고
2618건	1,693,520	

2. 「코로나19」 가 경기 예술인들의 수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 ■회원들의 매월 수입은 「코로나19」발생 전 50~250만원 정도였으며 그 수입원은 초중고강사, 바우처, 방과후교실, 개인레슨, 학원, 합창단, 관현악단, 밴드공연 및 전시로 인하여 수입을 창출하였었음
- ■조사 응답자 중 87.5%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도 예술인들의 전년 대비 금년 1~4월 사이수입이 '매우 감소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사태 이후로 경기도 예술인들의 수입과 관련하여 조사 응답자 중 56.3%가 '매우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함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전년 1분기 대비 금년 1분기 경기예술인들의 소득 변화〉

매우 감소했다(87.5%)	증가했다(0.2%)	감소했다(11.3%)
매우 증가했다(0.2%)	변화없다(0.8%)	

〈 코로나19 종료 후 예술인 수입에 대한 기대 〉

매우 감소할것이다(56.3%)	증가할 것이다(7.1%)	감소할 것이다(29.5%)
매우 증가할 것이다(0%)	변화 없을 것이다(7.1%)	

3.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추가 공모의 필요성

■「코로나19」 피해 관련 조사응답자 중 약 82.8%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기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추가 공모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 코로나19 피해 관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가공모의 필요성 〉

매우 필요하다(82.8%)	필요없다(0%)	필요하다(16.5%)
매우 필요없다(0.2%)	모르겠다(0.5%)	

- ■「코로나19 사태」는 공연, 전시, 교육 등에 종사하는 경기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인 복지적 측면의 지원과 함께 예술인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 예술인 및 단체 피해에 따른 생활·운영자금, 손실자금, 인건비 지원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함 (추경 편성에 문화예술계 지원 반영이 매우 절실함)

II.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예술문화활동의 방향

1.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수익구조를 개선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190530, 국회 문화예술역량강화 포럼 자료집 발췌)

민간예술단체가 법적 위상을 갖게 된다고 하여 예술인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인들의 취업률은 여타분야에 크게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국가가 집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 취업률이 여타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용형태는 거의 프리랜서에 몰려있다. 예체능 관련학과 졸업자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예체능계열 졸업자의 63.6%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가 건강보험직장에 가입된 교외로 취업을 했다. 취업의 절반은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이다.

		2016								
예체능계열	소계	취업률 (%)	취업자 (명)	건강보험 직장가 입자 교 외취업 자(명)	건강보험 직장가 입자 교 내취업 자(명)	해외취업 자(명)	농림어업 종사자 (명)	개인창작 활동종 자(명)	1인창 (사)업자 (명)1인 창(사)업 자(명)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총계	71,878	63.6	40,290	27,732	1,207	256	38	2,817	1,304	
전문대학	29,717	64.5	16,546	11,820	352	131	32	1,469	455	
대학	36,184	62.5	20,195	13,535	789	119	6	1,196	627	
산업대학	1,354	71.0	915	595	16	3	_	89	36	
각종학교	430	56.3	202	86	11	-	-	4	10	
기능대학	958	83.4	743	679	-	1	-	41	8	
일반대학원	3,235	59.8	1,689	1,017	39	2	-	18	168	

표33. 2016년 예체능교육자 취업현황(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그렇다면 취업자 중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떻게 될까. 예술인들의 개인수입 중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은 연 500만원 미만이 18.9%(2015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1,254,600원으로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1,672,105원이다. 준중위소득의 60%를 산정한 금액인

2018년 최저생계비는 월 1,003,263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0.4%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다. 36%가 예술 활동 수입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2015(단위: 만원)								
통계분 류(1)	통계분 류(2)	없음	500미 만	5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 3,000 미만	3,000 이상 [~] 4,000 미만	4,000 이상 [~] 5,000 미만	5,000 이상 [~] 6,000 미만	6,000 이상	평균
전체	소계	36.1	18.9	10.1	15	7.2	5	1.9	1.4	4.3	1,254.6
	미술	54.4	15	8.8	11.6	4	3.6	0.9	0.4	1.3	613.7
	공예	44.1	14.1	10.7	13.3	7.1	2.9	1.4	4.3	2.1	1,174.9
예술	사진	51.6	16.6	9.2	9.3	4.2	7.7	0.4	0	1	817.4
활동	국악	29.1	18.6	11	18.1	10.8	6.1	1.8	2.3	2.3	1,163
분야	무용	27.8	27.1	8.2	19.8	9.4	5.1	0.9	0.4	1.4	861.4
별	연극	24.2	22.7	11.8	21.8	7.8	5.6	2.2	1.7	2.2	1,284.8
	영화	21.1	10.3	19.6	18.2	12.5	10.6	3.4	1.2	3	1,876.6
	만화	14.5	12.5	11.8	18.7	14.5	8.5	10.7	2.2	6.6	2,001.7

표34. 예술 활동 수입(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실태조사 (조사대상 5,008명)

예술인들의 고용 형태도 타 직종과 판이하게 다르다. '프리랜서'가 72.5%로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건축분야(8.4%)를 제외하고는 문학(93.1%)을 필두로 대부분 자유직이다.

		프리랜서	계약직/ 임시직	고용주	정규직	파트타임	일용직	파견직	기타
	전체	72.5	9.8	6.5	6.4	1.5	0.6	0.1	2.5
	문학	93.1	0.8	0.4	0.9	0.0	0.4	0.0	4.4
	미술	86.7	3.1	2.5	1.2	2.5	0.2	0.0	3.8
	공예	70.1	8.8	14.2	3.4	0.0	0.0	0.0	3.4
분야	사진	70.4	8.0	3.0	8.9	3.3	1.7	0.0	4.7
	건축	8.4	2.3	43.3	45.9	0.0	0.0	0.0	0.0
	음악	61.6	18.3	7.6	8.0	3.8	0.0	0.0	0.6
	대중음악	80.3	9.4	3.9	2.5	0.6	3.4	0.0	0.0

		프리랜서	계약직/ 임시직	고용주	정규직	파트타임	일용직	파견직	기타
	전체	72.5	9.8	6.5	6.4	1.5	0.6	0.1	2.5
	국악	68.8	15.8	4.6	7.2	2.4	0.0	0.3	0.8
	무용	56.4	31.1	2.0	5.0	3.0	0.6	0.0	1.9
	연극	63.1	13.6	9.9	11.0	0.7	0.8	0.0	0.9
분야	영화	75.1	16.9	0.7	4.2	1.0	1.0	0.0	1.2
	방송	88.3	5.6	0.4	5.1	0.0	0.4	0.0	0.2
	만화	90.8	4.3	3.5	0.0	0.0	0.0	0.0	1.4
	기타	62.0	9.7	11.7	6.2	1.9	0.9	0.6	6.9

표35. 전업예술인의 고용형태(2015 예술인 실태조사 변형)

예술인의 경력 단절은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수입을 위해 예술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예술인이 평균 66%가 넘는다. 현재 약 80% 넘는 예술인들이 낮은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술인들은 현재 창작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거의 없고 생활을 위해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타 직종에서 수입을 얻고 있다. 경력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수익구조를 갖는 것은 예술교육 분야이다. 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그것이나 국가재정은 한계가 있다. 학부모와 일반 시민 등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연결시킬 방법과 통로는 오프라인의 학원 이외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휴대폰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면 좋다. 이에 걸맞은 공간이 바로 플랫폼(Platform)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면 경력중단의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수익구조를 확대할 수도 있다. 현재 일부 재능마켓 형태의 플랫폼에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강사의 구체적인 수준과 교육 커리큘럼은 담보할 수 없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까닭은 없다. 국가재정도 그렇거니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퍼져있고 수시로 변동하는 예술의 수요공급을 맞추기엔 부적절하다. 그러나 민간예술단체에서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및 수입증대를 위해서 온라인 매칭서비스 플랫폼 개설한다면, 플랫폼을 통해 창작품의 홍보, 전시, 판매는 물론이고 예술인의 경험을 시민교육과 연계하는 문화클럽의 장을 펼칠 수가 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예술교육 공급자와 수급자를 매칭 시켜주는 플랫폼 개발 2차 년도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발제자는 1차 개발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플랫폼을 예총 등 민간예술단체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속 예술인들의 경제적 수익 보장, 예술시장의 활성화,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예술교육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문예술법인의 설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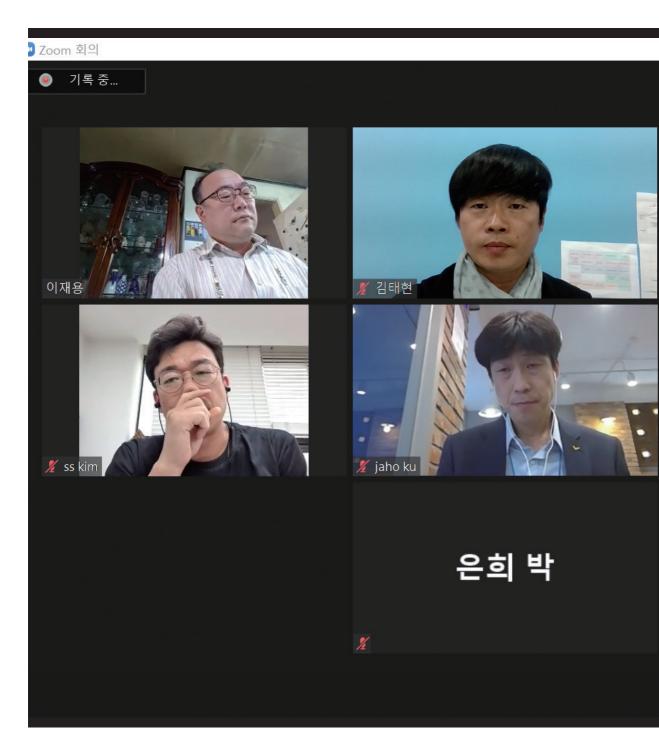
-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 ②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4.1.10.〉
 -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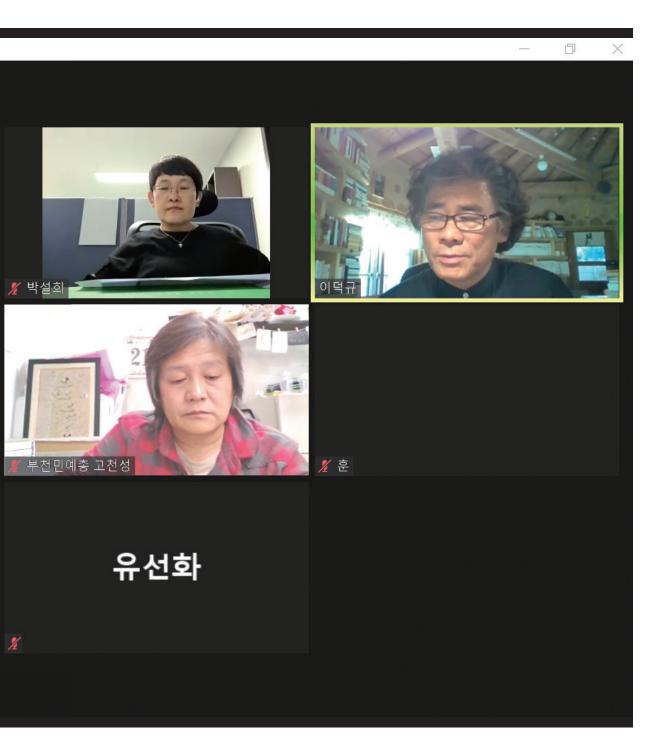
2011년 "며칠째 아무 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라는쪽지를 남긴 채 한 예술인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 이 일을 계기로 예술가의 지위 보장과 삶의보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예술인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을 위한 「예술인복지법」,「예술인고용보험법」이 통과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예술인기본소득법」등이 활발한논의와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예술단체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협업체제를 강조하기위해 법적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예술인의 권익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계의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나아가 예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수익구조를 확대하기위해서는매칭서비스 플랫폼이 시급히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을위해서는 전문예술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백

온라인 토론회



경기 민예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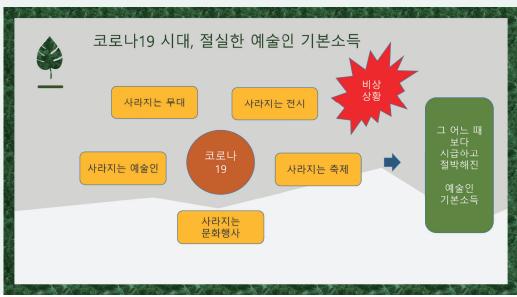
온라인 토론회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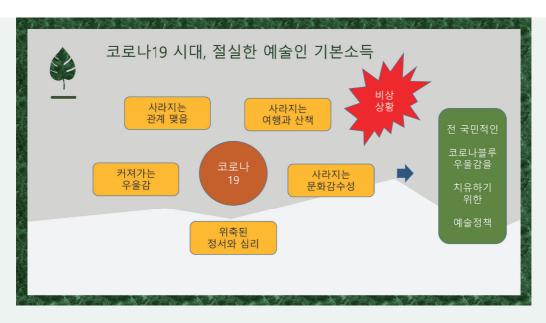
1. 개요

제목	예술인 기본소득과 예술인의 기준
기획의도	경기도 문화정책으로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는 '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 기본소득을 받게 될 예술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정책시행이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스스로 예술인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세워보고자 함.
일시 / 플랫폼	▶토론회 일시 : 10월 14일(수) 오후 4시 ▶온라인 플랫폼 : zoom화상회의
토론회 내용 요약	▶예술인 기본소득이란?▶예술인 기본소득 수급 대상자인 예술인,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전체 구성 (전체 참여자) 추진일정 등 세부사항	▶좌장: 경기민예총 이덕규 이사장 ▶발제자1: 경기민예총 김태현 정책위원 - 〈예술인 기본소득〉 - 〈예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예술인〉 ▶발제자2: 경기민예총 구자호 정책위원 - 〈예술인 기본소득에 준하는 외국사례〉 ▶토론자1: 경기민예총 김성수 부이사장 ▶토론자2: 경기민예총 이재용 안산지부장 ▶토론자3: 경기민예총 박설희 수원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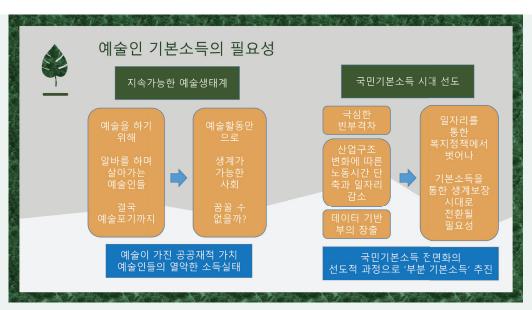
예술인 기본소득과 예술인의 기준 발제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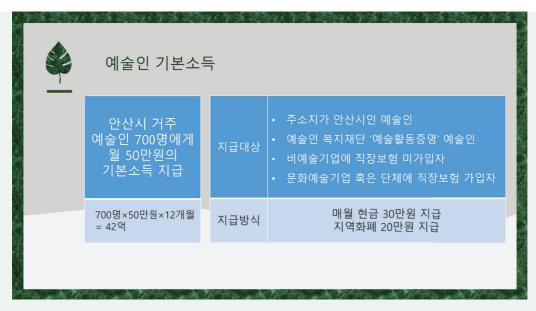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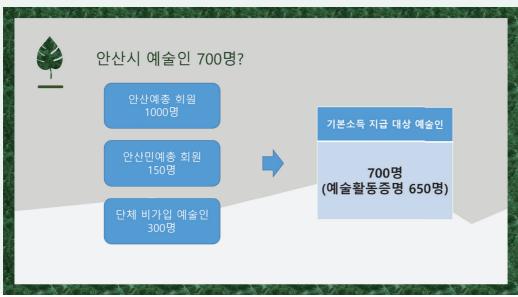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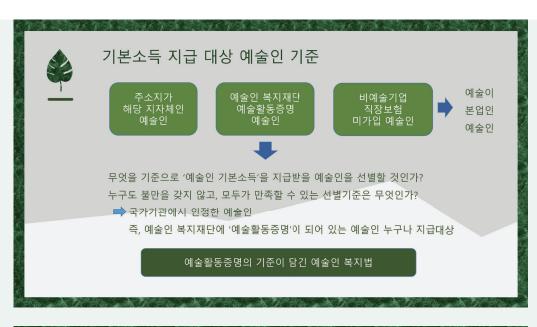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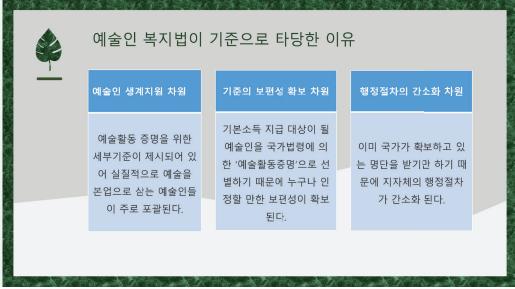














예술인 복지법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술인을 규정한다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예술활동 증명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예술인 복지법」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 3.>

- 1. 「저작권법」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 3.~5. 삭제 <2014. 3.28>
-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문학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③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르별 기준이 정해진다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예술인 복지법_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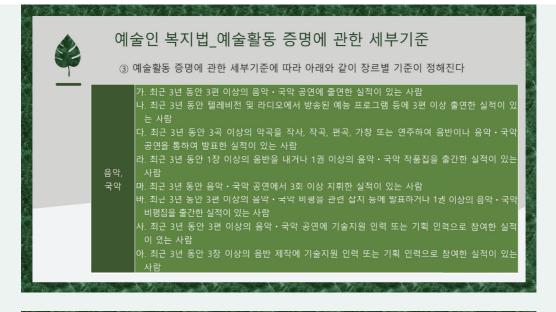
③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르별 기준이 정해진다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 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응용미술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 을 포함한 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시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사진, 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 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예술인 복지법_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③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르별 기준이 정해진다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예술인 복지법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④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기상인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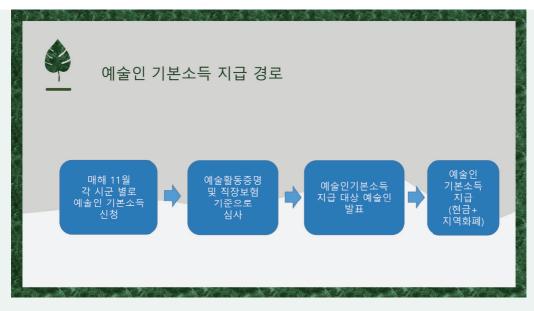
안산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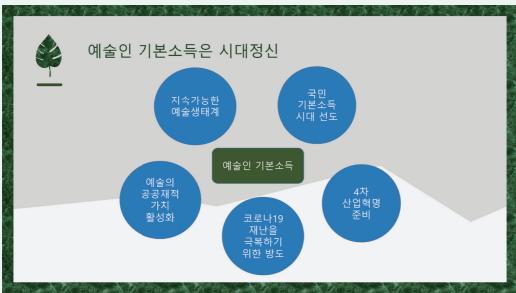
주소지가 안산시인 예술인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안되어 있는 경우 전문예술단체로부터 예술활동확인서 발급

비예술기업 직장보험 미가입 예술인

- 1. 해당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 2.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인 규정 충족한 예술인
- 3. 예술활동증명을 미처 못한 경우, 예술활동증명에 준하게 활동확인서를 발급하게 하는 융통성
- 4. 본업이 예술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비예술기업 직장보험 가입자 제의

예술활동증명 안된 경우 포용 안산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예술이 본업인 예술인 선정







경기도를 예술인기본소득 선도 지방정부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해외사례 발제-2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해외사례

경기민예총 정책위원 구자호

목차

- 1. 프랑스 앵테르미탕
- 2. 프랑스 작가사회보장협회
- 3.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 4. 룩셈부르크 특별재정지원제도
- 5. 네덜란드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
- 6. 미국 배우조합과 음악예술인조합

사례1. 프랑스 앵테르미탕

■특징

- 프랑스어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은 '간헐적, 불연속적, 불규칙적'이라는 형용사
- '공연예술 앵테르미탕'은 방송,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체결되고 있는 무제한으로 갱신이 가능한 단기 계약직

■노동법 상

- 영화제작, 방송 또는 공연 관련 직업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종사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활동이 (노동법전) 5424-20에서 예고하고 있는 실업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노동법전 L.5425-3)
-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 혹은 일자리의 일시적인 특성상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정규직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제작, 방송, 그리고 공연 활동 영역에 속한 근로자(노동법전 L.6331-55)

사례1. 프랑스 앵테르미탕

- 공연예술계 근로형태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단속적 근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실업보험과 다른 체계로 운영
- 일반적인 프랑스 비정규직은 두차례 초과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지만. '관례적' 비정규직, 즉 앵테르미탕은 노동법전(Article D.1242-1)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종 및 영역을 15가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중 여섯 번째 항목에 '무대공연, 문화 활동, 방송, 영화 제작, 녹음편집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대부분의 문화예술 부문에서의 관례적 비정규직 계약을 허용함.
- 문화예술계의 노동이 '관례적'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한 것임

사례1. 프랑스 앵테르미탕

- ■가입대상 및 자격
- ■- 실업보험 규약의 별첨 8(Annexe VIII)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공연예술, 방송, 영화 분야에 속한 기업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례적 비정규계약(CDDU)을 맺고 종사하는 노동자 및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최소 507시간 이상의 노동을 행한 자"로 규정
- ■- 공연예술가들은 10개월 반 동안 507시간, 주 35시간 기준 약 3개월 반 정도의 직업 활동을 한 경우 8개월간의 실업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약을 통해 증명

		기준노동시간	기간	실업보험금 지급기간
공연예술	기술직	507시간	10개월	243일(약 8개월)
종사자	예술가	507시간	10개월 + 1/2개월	243일(약 8개월)
일발 가입자		610시간	28개월	1일 노동 = 1일 지급 원칙

사례2. 프랑스 작가사회보장협회

■특징

-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는 자영 예술인은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예술을 포함한 8개 장르의 예술작품 생산에 중사히는 사람으로 정의
- 고용된 예술인은 일반 사회보장제도 적용
- 일반 자영업자 보험료 부담은 40%이지만, 자영 예술인은 근로자 보험료와 같이 15.5%로 혜택
- 비영리단체 작가사회보장협회(문학, 음악, 영화방송, 사진 관련 예술인 대상)과 예술인
 의집(미술인 대상)이 담당하여 관리, 저작권료 지불시 보험료를 기업에서 자동으로 징수
- 저작권을 받는 예술가는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
- 건가보험, 양육보험, 노후보험 혜택

사례2. 프랑스 작가사회보장협회

- 가입대상 및 조건
- 지적 창작물 생산하고 저작료를 받는 사람
- 예술활동 전년 총소득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900배(2007년 기준 7,335유로 이상, 950만원)
- 소득이 낮을 경우 예술활동 전문성 증명, 심사 후 가입 가능

사례3.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특징

- 1981년 제정
- 가입 의무화, 보험금 50% 개인부담
- - 국가가 20%, 저작권 사용자가 30% 부담
- 저작권 사용자는 예술가의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갤러리, 공연장, 오케스트라, 이벤트기획사, 출판사, 언론사, 방송사, AV와 음악제작사, 박물관, 서커스단, 예술인 훈련기관 등으로 대단히 포괄적
- - 예술가와 업무계약을 통해 보수의 4.4%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 의료보험,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는 제공하지 않음

사례3.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가입대상 및 조건

- 문화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예술가(음악, 공연예술 및 미술을 창작 및 영위하 거나 또는 이를 가르치는 자) 및 언론출판인(작가, 언론인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출판업에 종사하거나 언론출판학을 가르치는 자)로 규정
-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예술가
- 예술활동을 통한 연간 총소득규모가 3,900유로 이상(2009년 기준, 660만원)
- 취미 예술가 엄격히 제한
- 정규직, 비정규직 예술가들은 일반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 편입

사례4. 룩셈부르크 특별제정지원제도

-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자영업, 비정규직 예술인
- 재원은 연방정부와 문화예술 사회보장기금에서 충당
- 가입조건은 최소 3년간 전문 활동과 소득수준 입증

사례5. 네덜란드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

- 미술가, 작가, 공연예술인 등을 대상
- 생계 유지 위험으로 예술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예술가
- 지역별 사회보장금고에서 지급
- 전년도 예술활동과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1200유로(150만원) 이상 있음을 입증
- 예술활동 수입이 최저임금의 125%가 되면 제외

	국가	사회보장제도	대상	조건
		예술가사회보험법	음악, 공연예술, 미술,	∞ 자영예술가
	독일	:연금, 의료보험, 요양보호		예술활동을 통한 연소득 3900유로 이
		서비스	언론출판	상(660만원)
		작가사회보장협회	이 무슨 여러비스	∞ 자영예술가
		:건강보험, 노후보험, 양육	음악, 문학, 영화방송, 사진분야 작가	예술활동을 통한 연소들 7335유로 이
		보험		상(95)만원)
	프랑스	앵테르미탕	공연, 영상분야	-비정규직 예술가
				기술직:10개월간 507시간
		:8개월간 실업수당		실연예술가:10.5개월간 507시간
		특별재정지원제도 :재정지원	미술, 작가, 공연예술	-자영 및 비정규직 예술가
	룩셈부르크			3년간 예술활동 증명
				최저소득 이하 증명
	네덜란드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	미술, 작가, 공연예술	-1년간 예술활동 증명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 1200유로(150
		:최저임금 70% 4년간 지급		만원i이상

사례6. 미국 배우조합과 음악예술인조합

■특징

- 사회보장 부재
- 산별예술인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가 기금 조성
- 미국배우 및 예술가연합 : 미국배우조합, 미국음악예술인조합, 미국쇼출연자조합, 미국 배우-TV 및 라디오 연기자 조합, 이탈리아계 미국인 배우조합

■미국배우조합

- 조합이 인정한 극장이나 프로덕션과 계약하여 활동하는 사람
- 입회비 1,100달러, 연회비 118달러, 주당공제금은 수입금의 2.5%
- 조합원은 근로계약, 최소급여수준 보장, 표준양식 고용계약, 의료보헙, 연금서비스, 장애인 및 실업자 지원, 오디션 기회 제공 혜택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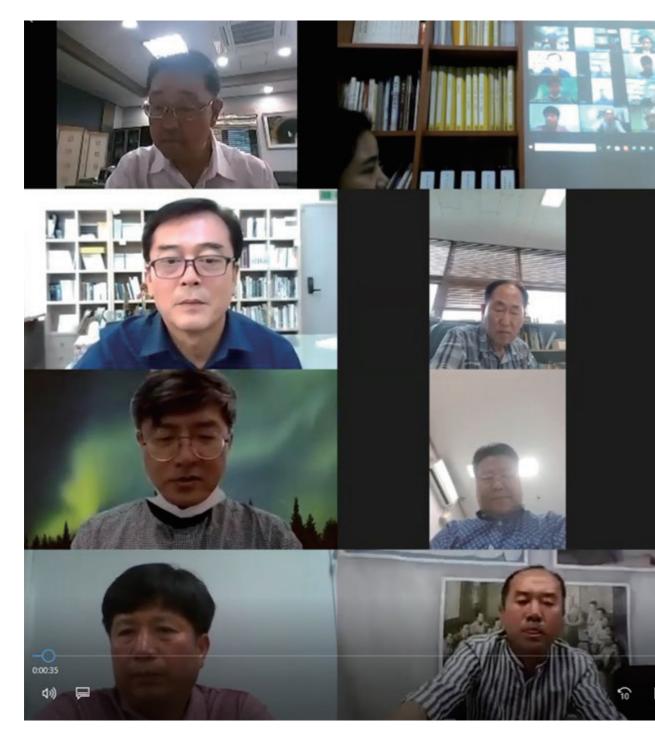
사례6. 미국 배우조합과 음악예술인조합

■미국 음악예술인조합

- 오페라, 콘서트, 무용 분야 예술가 대상
- 무용수, 안무가, 무대기술자, 무대감동 등이 회원
- 최상위급 오페라단, 발레단 등 72개 대규모 공연예술단체로 한정
- 입회비 500달러, 연회비 78달러, 주당공제금은 수입금의 2%
- 조합원은 최소 급여수준 보장, 연습시간과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 휴가 및 병가, 의료보험, 노후 계획, 긴급구호자금, 오디션 혜택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온라인 토론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온라인 토론회 계획서

1. 개요

제목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5개년 계획과 지역		
기획의도	전국 230개 지역문화원은 저마다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수립한 5개년 계획을 경기도 문화원과 공유하고, 2021년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시 / 플랫폼	▶토론회 일시 : 6월 19일(금) 오후 2시~4시 ▶온라인 플랫폼 : zoom화상회의		
토론회 내용	▶2021년 시행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 따른 실천적 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전체 구성 (전체 참여자) 추진일정 등 세부사항	▶좌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 (모두토론 형식으로 함) 가평문화원 김철 사무국장, 광명문화원 한용삼 사무국장, 구리문화원 이성재 사무국장, 김포문화원 정현채 사무국장, 동두천문화원 박용철 사무국장, 성남문화원 김정진 사무국장, 수원문화원 최중영 사무국장, 시흥문화원 하세용 사무국장, 안성문화원 이영호 사무국장, 안양문화원 한길열 사무국장, 양주문화원 박재홍 사무국장, 양평문화원 손영철 사무국장, 여주문화원 안동희 사무국장, 연천문화원 김탄일 사무국장, 오산문화원 김종욱 사무국장, 의왕문화원 김상범 사무국장, 의정부문화원 박정근 사무국장, 미천문화원 이동준 사무국장, 파주문화원 서교송 사무국장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5개년 계획(안) 발제문

1.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2011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어 있음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1.〉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1.1.1]]
- ●지방문화원 체계적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요구
- ■1950년대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향후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
- ■지방문화원은 주로 향토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문화의 조사·발굴, 지역문화축제, 교양 및 문화 강좌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시대적 요구와 정책 환경이 국민의 문화향유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지방문화원의 본래역할은 의미가 축소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놓고 지역의 문화 및 유관단체들과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함
-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를 개선,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 문화단체들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역할 등의 재구성이 필요함

2) 목적

- ●그간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평가와 성찰, 시대적 요구의 수용, 그리고 참여와 소통이 전제된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등)에 의거한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1) 중앙정부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지자체 시행계획의 지침 성격을가짐

- ■본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조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지방문화원 지원과 육성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지방문화원 진흥의 비전과 구체적인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음
- ■지방문화원의 그간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성찰적 계획 수립
-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지방문화원 관련 주요 지표의 점검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함. 나아가 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평가를 위해 법률 개정 및 재원투입 계획과 정책평가 지표를제시함
- ■모두가 공감하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하며 이의 결과를 계획에 적극으로 반영함

지방문화원 종합진단 및 중장기 발전방안

- 1. 대내외 환경진단
- 2. 전략 방향 도출
- 3.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 중장기 발전방안

1. 대내외 환경진단

1) 거시환경

- ●인구. 사회 환경
- ■(저출산 고령화) '17년 합계 출산율 1.05,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60만 명에서 2067년 512만 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인구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개(39%) 소멸할 위험
- ■(다문화 가정증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약 237만 명(국내 인구 대비 약 4.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경제환경

- ■(저성장 고착화 및 경제 양극화) 19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3% 감소, 국내총소득(GDI)은 0.2% 증가 등 저성장이 고착화 하는 가운데 지역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
- ■(상대적 빈곤율) 2019년 6월 기준, 고용률은 61.6%(전년동월대비 0.2%p 상승)이며,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

●정책환경

- ■(지방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국가 미래비전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하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의 지방이양 확대
- ■(사람 중심 문화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를 비전으로 하여 이를 위해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의 개념을 확장

2) 지역여건

- ●지역쇠퇴와 지역문화 소실 위기
-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역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 쇠퇴와 소멸이 진행 중
- 2018년 6월 기준 전국 228개 중 89개(39%)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음(고용정보원, 2018)
- ■지역의 소멸에 따라 지역의 생활, 문화, 기억 등도 같이 소멸할 수 있는 위기

●지역문화공동체 붕괴 지속

- 급격한 개인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면대면 접촉의 축소 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붕괴, 사회적 갈등 증폭
-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지표 중 공동체(사회적 지원관계망, Perceived Social Network Support) 지표에서 38개국 중 37위(OECD, 2016)

●문화적 불균형 지속

- ■지역 내 GDP 최대 330조부터 최소 14조로 지역 간 격차가 존재
- ■인구 백만 명 당 최대 196.34개부터 최소 30.14개로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에 차이가 존재

●다양한 문화조직의 출현

-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문화 사업이 다양화되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 관련 조직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유사한 문화관련 조직 간의 사업 중복과 경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조직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핵심 고유 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3) 지방문화원 현황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 제고 필요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이 공모를 통한 보조금전달, 자체 사업에 치우쳐 있어 연합회 기본 역할이 회원 문화원에 대한 지원 역할이 미미함
- ■시·도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회 형태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시·도에 조례가 있는 경우도 10곳으로 이중적이고 모호한 조직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조직위상의 재설정 필요
- ■한국문화원연합회-시·도문화원 연합회- 지방문화원의 역할분담 미비, 운영체계 미비

●재정확보 미흡

- (재정지원 한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의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에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 활동'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 불가
- ■(지방비 의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지자체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의 약 70% 차지

●운영기반 미흡

- ■(실행력담보 미비) 「지방문화원진흥법」은 구체적·실천적 조항미비, 조직·시설 기반 미흡, 법·제도 미비로 인한 문화원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지원근거미흡) 지자체 중 81.4%(188개)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를 마련, 문화원 운영 필수기반인 인력지원근거를 명시한 조례는 74개(39.4%), 시설지원근거를 명시한 조례는 168개(89.3%)

●인적 자원 역량 부족

- ■(인력부족) 지방문화원의 평균 인력은 3.4명, 문화원의 약 42%는 직원 2명 이하로 연간 평균 28.7개의 사업을 수행. 사업수행 대비 인력부족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수요대응에 한계 존재
- ■(전문성미비) 지방문화원 직원 중 문화예술전공자는 사무국장의 경우 39.5%, 일반직원의 경우 28.3% 수준으로 전문성 재고 필요

●시설 노후화 및 부족

- ■(시설노후화) 지방문화원의 35% 이상이 90년대 전에 건립된 문화원으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
- ■(시설부족) 「지방문화원진흥법」 상의 문화원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화원이 21.6%로 나타나고 있어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

- ●자료관리 체계의 미비
- ■지역문화 발굴 및 수집 활동을 핵심 사업을 하고 자료실 영구보존을 위한 아카이빙(22.1%)을 하는 문화원은 적고, 자료의 위탁 기증 등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 곳도 소수 (21.7%)
-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성 부족
-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축적의 중요도(70.8%) 및 활용의 요구도(역사문화관련 정보획득, 43.4%)가 높은 반면, 축적된 자원을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의 부족(향토자료 대출 기능 65.4%)
- ●회원관리 체계의 미비
- ■사단법인의 특성상 법인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관리의 부재로 인해 회원 수의 감소('16년 대비 '18년 총 회원 318명 감소)
- ●문화공동체의 증가
- '16년 문화원당 평균 4.1개에서 '18년 7.4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설립하거나 계획 중인 공동체도 193개에 이름
- ●다소 과장된 경쟁 인식
- ■지역 문화재단의 출현으로 문화원 입지 축소 우려가 팽배하나,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의 문화원과 없는 지역의 문화원 중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의 문화원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음
- ■역사와 관련된 자료, 공동체성과 관련된 회원 수는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이 도리어 우위를 보임

4) 지방문화원 수요

- ●지방문화원 인지 및 이용
- ■거주 지역 주변에 지방문화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38.7%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문화원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는 시민이 74.1%로 대다수의 사람이 이용 경험이 없음

- ●지방문화원 사업의 중요도
- ■지방문화원의 사업 중에는 '지역문화의 계발, 보존 및 활용사업(76.5%)'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지방문화원 축적자원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역 역사문화관련 축제 개발(54.7%), 역사문화관련 콘텐츠 개발(52%), 역사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39.8%), 역사문화의 복원 및 재연(39.4%) 등이 중요하다고 의견 제시
- ■지방문화원의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7%
- ●지역 역사, 문화 관련 관심 콘텐츠
-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항은 지역의 축제, 문화행사, 문화프로그램(44.2%), 문화유산(20.1%), 지역 스토리(12.8%)로 나타남
- ●지역 역사문화 보전의 중요도 인식
- ■지역의 역사문화 보전의 중요도 인식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0.8%로 높게 나타남

5) 종합진단

- ●중요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
- ■기존에 문화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현재 상황과 미래방향에 대한 진지한 실행은 미미
- ■정부 행정체계의 변화와 다양한 문화관련 조직의 등장은 문화원의 미래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음
- ■문화원의 태동기부터 1990년대까지 지역문화사업이 문화원 독점 구조로 진행되어 오다가 문화사업이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사업을 수행할 전문조직들이 등장하면서 문화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전반적으로 지방문화원의 자립성이 약화한 가운데, 지방분권 등으로 정부의 행정적 지원체계는 불명확하고 평준화되지 않아 지방문화원 간 자립성 격차 발생
- ■문화정책 중 가장 먼저 지방의 사업으로 이양된 지방문화원사업은 관련제도의 미비로 여전히 중앙과 지역정부 역할 혼란이 있는 가운데, 자구노력이 부족했던 문화원을 중심으로 어려움에 직면
- ●환경변화에 미흡한 적응

- ■국고보조. 지방비보조로 인한 자립성의 약화
- 태동기에는 민간조직으로 자율, 자립적인 활동하다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의 자율적 추진동력이 약화됨
- 그간 선도적인 문화기관으로 많을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예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외부적 불신이 생겨남
-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 ■사회 전반적으로 수평적이고 민첩한 조직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지방문화원은 여전히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구조와 조직문화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
- ■또한,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로를 모색하는데 약함
- ■문화원 핵심역량의 약화
- ■문화정책 태동기에 모든 문화정책을 문화원이 수행하면서 핵심 고유기능영역 외의 다른 영역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문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른 영역의 경우 다른 조직과의 경쟁 발생
- 이러한 결과로 지방문화원만의 고유 사업인 지역 공동체 문화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고 있지 못함
- ■더불어 기존의 전통적 자원의 수집을 넘어 근현대의 개인과 공동체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장 수집하여 미래 유산으로 남기는 역량 배양의 기회 부재
- ■핵심 자원을 활용한 수요창출 역량 부족
- ■역사문화, 향토문화와 관련된 연구역량, 자료수집과 관련된 역량은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지만. 이를 외부로 보여주는 역량이 부족
- ■문화행정과 문화경영역량 부족
- ■행정체계가 복잡해지고,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기관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
- ■처우가 좋은 다른 문화조직으로 인적자원이 유출, 지방문화원 역량 하락, 지방정부의 신뢰 악화의 악순환 구조에 기반한 문화원이 생겨나고 있음
- ■시대변화에 따라 조직역량관리도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예전의 인력관리방식을 지속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절한 사업추진동력을 얻을 수 없음
- ■체계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지방문화원 고유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하여 문화원 사업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2. 전략방향 도출

1) 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 ●지방문화원의 강점
- ■전국 230개 네트워크 보유. 10만 6천여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내 위상이 매우 높음
- ■「지방문화원진흥법」재정에 따른 법적 위상을 보유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공동체는 1개원 당 평균 7.4개로 지역의 공동체성이 유지되는 영역임
- 평균 운영기간 39.5년으로 오래 시간 지역민·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지속적 지역문화자원 보존·발굴 활동에 따른 풍부한 원천콘텐츠(소장자료 152만 건)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지방문화원의 약점

- ■보조금관리법에 의해 지방문화원은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국고보조 사업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오래된 이미지로 인해 이용객이 중장년·어르신 위주로 되어 있음
- ■지방문화원 운영체계의 미비, 지방문화원 간 네트워크 연계·활용 미비
- ■지방문화원의 직원 및 전문 인력의 부족 심화는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활용이 미비함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정체성 혼란

●지방문화원의 기회

- ■성장잠재력의 약화,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분절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의 쇠퇴·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문화자원 보전 필요성이 증대됨
- ■지방자치·분권과 문화분권 정부정책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 창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현 정부는 생활 SOC 투자의 확대로 사람과 지역 경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문화, 교육, 환경 관련 기반 시설들 확충할 계획에 있음
-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역사문화의 문제가 국가에서 개인 공동체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위기
- ■재정분권의 가속화로 인해 지역문화재정의 축소 우려 및 지방문화원 재정 불안정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정책과 재정이 대시민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지방문화원의 고유의 역사문화 영역의 중요성 감소 우려
- ■문화재단 등이 유사기관이 지속적으로 생김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특정영역에서 역할 갈등 경쟁이 나타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노후화된 이미지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약화

●SWOT분석을 통한 전략도출

강점(S) 약점(W) ·전국 230개 네트워크 보유. 10만 6천 여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국고보조 사업 확보 명 회원 보유 어려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법적 위상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 심화 및 자율성 보유 약화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설 노후화. 오래된 이미지·이용객 문화공동체 (1개원 당 평균 7.4개) 편중(중장년·어르신 위주) ·문화원 운영체계. 문화원 네트워크 · 평균 운영기간 39.5년. 오래 시간 지역민·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연계·활용 미비 및 전문성 보유 ·문화원 인적역량 부족(인력 부족 등) ·지속적 지역문화자원 보존·발굴 활동에 (문화예술전공자 사무국장: 39.5%. 따른 풍부한 원천콘텐츠 확보(소장자료 직원: 28 3%) 152만건 등) ·보유 자료·정보에 대한 활용 미비

기회(0)	위기(T)		
· 이야기산업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한 콘텐츠개발수요증가 · 자치분권, 문화분권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관심 제고 기대 · 역사문화의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과 공동체로 이동 ·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 확대(신남방 정책, 한류 등)			

표52. 지방문화원 SWOT 분석

●SO 전략

- ■지역 고유문화의 보전 역할을 강조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포지션을 명확화
- ■지방문화원의 강점과 축적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방문화원 핵심 사업을 계승함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의 외연확장 모색

●ST 전략

- ■지역 고유문화사업과 관련된 지역 간 역량 편차를 줄여 지방문화원 사업 역량 이미지 제고
- ■지역 내 타 문화기관과의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 확대를 통한 세분된 문화정책사업 시장에서의 역할 공고화
- ■지방문화원 네트워크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 확대 및 지속 가능성 기반 마련

●WO 전략

- ■지방문화원 핵심역량을 제고·극대화하여 지역 고유문화 보전영역에서 대체 불가능성 확대
- ■지방문화원 운영의 투명성과 수평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제고
-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기능을 지방문화원 지원에 집중

●WT 전략

-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법률, 조례, 정관 등의 현실화를 통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기반마련
- ■약점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이미지를 역으로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및 실버문화예산의 적극적 확보
- ■지역 내 유사기관과의 협력과 역할 구분을 통해 예산 및 사업의 안정성 확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문화 및 인적역량 관리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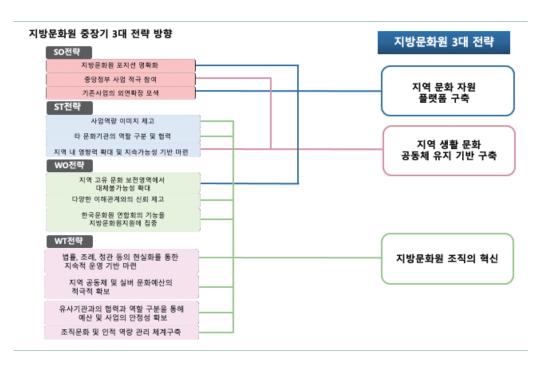


그림7.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3대 전략 방향

-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3대 전략 방향
- ■(지역 문화자원의 구심점 역할 강화) 지방문화원의 핵심 역할인 고유문화를 발견하고 축적, 유통하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 모색
- ■(지역 공동체에서의 역할 강화) 지방문화원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체와의 접촉면과 역할을 확대
- ■(조직의 역량 강화) 지방문화원 운영체계를 고도화 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미래 재도약의 발판 마련

3. 경기도 지방문화원 중,장기 발전 방안

1) 기본계획의 비전 설정

- ●헌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공통지향
- ■헌법 제9조 문화국가 실현의 원리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
-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3.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조성
-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전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 사업

제8조(지방문화원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문화의 계발, 보존 및 활용
-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
-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 6.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
-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지역의 정체성. 고유문화 보전과 관련된 사항이 공통항목
- ■헌법에서 강조하는 민족문화창달을 위해 지역에서는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보전해야 하고. 이를 지방문화원이 담당해 왔음

- ●지방문화원의 축적된 역량의 극대화를 통해 도달 가능한 비전 설정
- ■(잊혀진 가치의 회복) 지방문화원의 그간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잊혀진 한국, 지역문화의 가치를 회복.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임
- ■(소중한 가치의 보호) 지방문화원의 역할 중 하나는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소중한 지역문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미래에 전하는 것임
- ■(새로운 가치의 창출) 지방문화원의 또 다른 역할은 축적된 지역의 문화자원, 이야기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해석. 활용하여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비전설정

- ■(삶의 균열) 기술발전에 의해 가속화되는 인간의 소외, 면대면 접촉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기록 축적 및 재현
- ■(공동체의 붕괴) 면대면 접촉, 공동체적 상호작용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살믜 모델 제시
- ■(지역의 쇠퇴) 변화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지역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보전하여 공동체 유산으로 미래세대에 전승

●도출된 비전의 내용

-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원칙, 지방문화원이 그간 해왔던 역할들을 종합해보면, 지방문화원은 지역 정체성의 수호 및 전승 매개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역할에 충실하고 보다 심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향후 5년간 비전은 쇠락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이 재도약할 발판으로 지방문화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의 고유성 창출과 공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2) 기본계획의 핵심가치 설정

▷자율성

그간 문화행정구조에 의해 소극적, 의존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자립성, 독립성, 자율성 등의 가치를 가진 조직으로 변화

▶다양성

'다양한 문화, 하나의 목소리 (Multi-Window, One-Voice)'가치를 통해 지역문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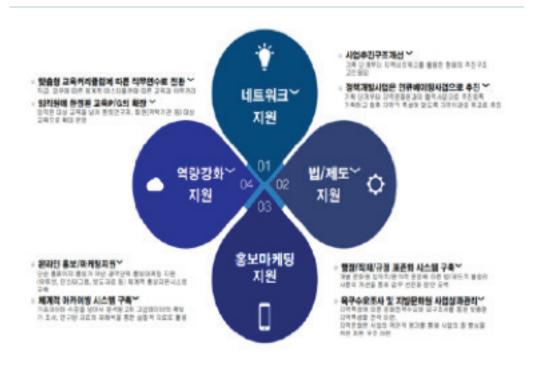
고유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핵심조직으로 위상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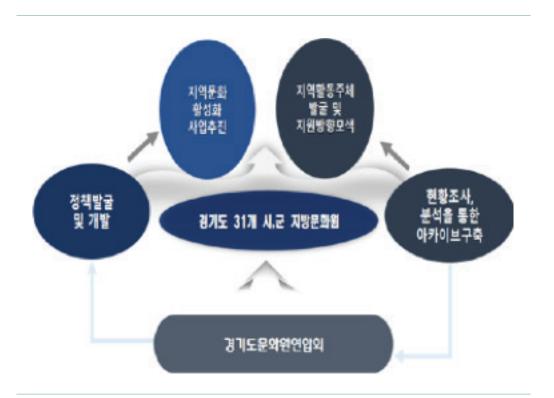
▶혁신성

자율성과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행화된 조직체계, 업무방식, 인적자원을 과감히 혁신하여 지방문화원 재도약의 발판 마련

3)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설정

- ●추진체계
- ■(경기도) 개인, 공동체 문화 및 역사를 도, 시, 군 공통의 업무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내 도, 시, 군 공동 사무 발굴 및 확산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지역문화 보전 사업 개발을 위해 협력하며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발굴된 사업에 대해 지방문화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시, 도와의 정책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장기적으로 독립된 연합회 역할 수행
- ■(지방문화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고유성 확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방문화원의 역량 강화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4) 기본계획의 비전

- ■지방문화원의 비전은 '지역문화'의 창조와 공유로 설정하고 핵심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혁신성으로 설정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지역문화자원의 플랫폼 구축, 지역 생활문화공동체 유지기반 구축. 지방문화원 조직 혁신으로 설정함
- ■정책과제는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지방문화원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함



그림10. 지방문화원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지역문화자원 플랫폼 구축	지여 고도레 새하 묘하이 스지	소멸 위기의 당대기록사업 추진
	지역 공동체 생활.문화의 수집, 기록 강화	개인공동체의 역사(생활사) 기록사업 추진
	지역문화자원플랫폼 구축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한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 -인강 구성 및 전직원 수강가능 하도록 시스템 구축
	지방문화원을 지역학의 거점으로 육성 -아카이빙에 대한 장기적 계획 구성 및 실행	지방문화원의 마을 기억 저장 기능 강화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의 활용 강화 -기존 도서(장서 등) 메타데이터 생성
	지역문화자원의 국내외 공유 강화 -경기도 31개 지역 문화원의 정보공개 창구 개방	지역 간 향토문화자원의 교류 강화 -홈페이지 서비스 오픈 -지역 및 광역에 선언식 홍보
		국제 지역문화자원의 교류 강화
	지역공동체문화유산 복원/활용 강화 -지역문화원 전 직원의 향토문화연구 및 아카이빙에 대한 의식화	잊혀진 지역문화 복원 추진
		지역문화유산 활용 강화 -회의,연수를 통한 아카이빙 중요도 인식
지역생활, 문화공동체 유지 기반 구축	지역공동체 기반 문화교육체계	문화학교와 생활문화센터 연계 강화
	-문화학교의 체질개선과 비전제시에 대한 합의	-경기도만의 지속분석 및 용역을 시행하여 개발

지역생활, 문화공동체 유지 기반 구축	-교육모델 개발	강의 및 강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
		청소년 대상 지역문화교육 강화
	지역공동체 지원 서비스 강화 -지역학을 기초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상	이주민을 위한 지역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역문화자원봉사 선순환체계 구축 -공통으로 합의모색
지방문화원 조직의 혁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독립성 강화
		지방문화원 현황파악 및 데이터 뱅크 고도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조직체계 혁신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준조례안을 활용하여 문화원 육성조례 및 자체규정을 제정 -자체규정 개정	지방문화원 역량강화 지원 -개정시 목적사업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 -문화원사 지원조례는 원사관리 별도지침
		지역문화정책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지방문화원 사업의 지속적 성과분석 및 사례연구
		지방문화원 홍보/마케팅 지원
	지방문화원 인적 역량강화	지방문화원장 리더십 교육 확대 -지역문화선점교육 연중실시
	-지역문화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임직원 리더쉽 교육 및 역량강화	지방문화원 직원의 실무역량강화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위해 대내외적 인증 시스템을 도입 -지역문화선점교육 연중실시

		지역생활사전문인력양성
지방문화원 조직의 혁신	지방문화원 운영기반 고도화 -문화원 인건비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급여조견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시에 적용	지방문화원 내부직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근로에 필요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정 -급여조견표는 4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을 명시 (국장, 과장, 대리, 주임)
		지방문화원 사업파트너와의 협력강화
		지방문화원 수입모델 개발 및 확산
		지방문화원 대외 이미지 제고 -문화원사용 개념어 사용변화 -지역이슈 선점 -문화원성과 공식화 -네트워크 홍보비를 일정액 책정 -공동프로젝트 네트워크사업 년1회 실시
	지방문화원 지속가능경영기반구축	지방문화원 법, 제도 개선
		지방문화원 운영의 표준 마련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위기나 공동목표, 협력 사업을 제시
		지방문화원 시설 및 환경 개선 -매월, 매주 시간을 1시간이라도 각 지역의 현안공유 회의(원장, 국장, 직원포함)실시 -협의회조직 활성화

여백

경기ABC(Art Born Culture)

경기 예술은 문화로 래어난다

결과보고서

사업개요

"대안마련" _홀로그램 제작과정 공개

대안마련

기획의도: 공연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전시 형태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홀로그램 기법을 활용하여 키트제작 및 영상을 구성해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

홀로그램 키트 3가지 제작

등변사다리꼴 4개 접합, 사각뿔대

*바닥면 bxb 크기 정사각형 블랙 아크릴

*옆면 투명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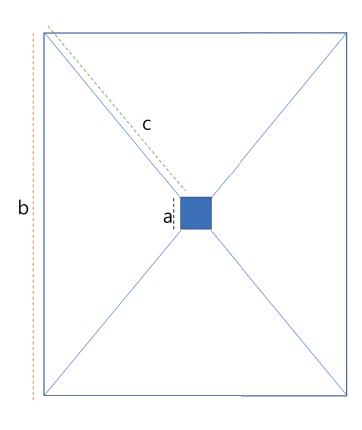
*두께 3mm

① 20개 a: 15mm b: 120mm c: 70mm

② 3개 a: 20mm b: 200mm c: 130mm

방법

① 키트제작



평면도

② 활용법



알기쉬운 홀로그램 사용법









여백

경기ABC(Art Born Culture)

경기 예술은 문화로 래어난다

결과보고서

홍보물

웹포스터, 타임테이블





3개 단체 연합행사 ☑ 타임테이블

방송일시 | 2020년 9월 11일 오후 4~5시 MC | 안지환 성우, 이길아 아나운서





구분		시간	ST/VCR	분량	프로그램
MC 행사 소개 공연 영상 연합행사 - 경기 ABC 행사 MC 공연 영상	MC	16:00 - 16:05	ST	2'	[MC멘트] 오프닝
		16:10	VCR	5'	영상 하이라이트 및 오프닝 인사말 하이라이트 영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경기 민예총 이사장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장 인사말
		16:15	VCR	5'	[공연1] 민회빈강씨 MV
		16:20	VCR	5'	[공연2] 사랑가
		16:25	VCR	5'	[공연3] 서도소리
		16:28	VCR	5'	[공연4] 성악 (향수, the pantom of the opera)
	MC	16:33	ST	3'	[MC멘트] 3개 단체 통합해 설명(각1분씩)
		VCR	5'	[공연5] 공연그대 고운 내 사랑,	
		16:43	VCR	5'	[공연6] 별 헤는 밤, 시의 숲
		16:48	VCR	5'	[공연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나리와 사자춤
		17:00	VCR	5'	[공연8] 소원성취 버나놀이
	MC	17:02	ST	2'	[MC멘트] 클로징

경기도 3개 문화예술단체 연합행사 경기ABC(Art Born Culture)

경기예술은 문화로 태어난다.

결과보고서

발행인_ 염상덕

편집인_ 최영주

기 획_ 박현미

발행처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전 화_ 031-239-1020

팩 스_ 031-239-3785

인 쇄_ 2020년 12월 15일

발 행_ 2020년 12월 31일

인쇄처_(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

이책은 '2020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비매품〉